

손에 잡히는 회계감독



매출 감리지적사례를 통한 감사위원회 시사점

2025.03.13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Audit Committee Institute)

손에 잡히는 회계감독

매출 감리지적사례를 통한 감사위원회 시사점

매출의 중요성과 주요 개념

수익은 재무제표 이용자가 기업의 재무성과·상태를 평가할 때 중요한 수치임
기업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이전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해야 함

5단계 수익 인식 모형



01 계약 식별

고객과의 거래에서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계약의 인식과 계약 결합 또는 변경을 고려하여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



02 수행의무 식별

고객에게 이전을 약속한 재화, 용역(의무)을 식별
약속한 의무를 각각 구별할 수 있는지 검토



03 거래가격 산정

고객으로부터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지급하는 할인,
판매장려금 등은 수익에서 차감하여 산정



04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다수의 수행의무가 있다면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거래가격을 각각의 수행의무에 배분



05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

의무 이행(인도) 시 또는 기간에 걸쳐 수익 인식

2024년 상반기 기준, 과거 14년간 매출·매출원가가 가장 높은 비중으로
금융감독원의 감리지적사례로 공개되었음¹⁾

감리지적사례를 통해
매출 회계처리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

1) 금융감독원, "2024년 상반기 회계심사. 감리 주요 지적사례 및 시사점", 2024.9에 따르면 11년부터 24년도 상반기까지
공개된 감리지적사례 주제 1위는 매출·매출원가(40건), 2위는 투자주식(30건), 3위는 재고·유형자산(23건)에 해당함

손에 잡히는 회계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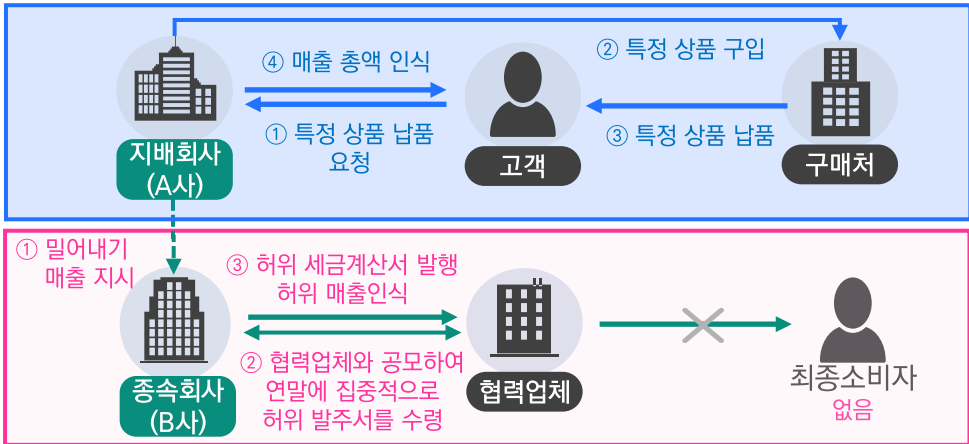
매출 감리지적사례를 통한 감사위원회 시사점

감리지적사례 1. 매출 총액인식과 종속회사를 통한 연결 매출 허위 계상

01

예시²⁾

- 지배회사는 고객사가 회사 제품 사용에 필요한 ‘상품’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구입하여 제공하면서 상품매출(총액)로 회계처리 함.
 - 지배회사는 약속이행의 주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상품 구입을 취소하는 경우 반품이 가능 등 재고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며, 가격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상품매출’을 순액으로 회계처리해야 함.
-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의 IPO 이후에 ‘밀어내기 매출’을 지시하였음
 - 종속회사의 영업부서는 협력업체와 담합하여 최종 소비자가 없음에도 연말에 집중적으로 허위의 발주서를 제출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매출을 과대 계상



시사점

- ✓ 회사가 본인으로서 거래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계약서 내용과 거래의 실질 등에 관한 질문 필요
- ✓ 협력업체를 통한 매출의 경우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공급이 완료되었는지 추가적인 확인 필요

2) 금융감독원, “2024년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및 시사점”, 2024.9

손에 잡히는 회계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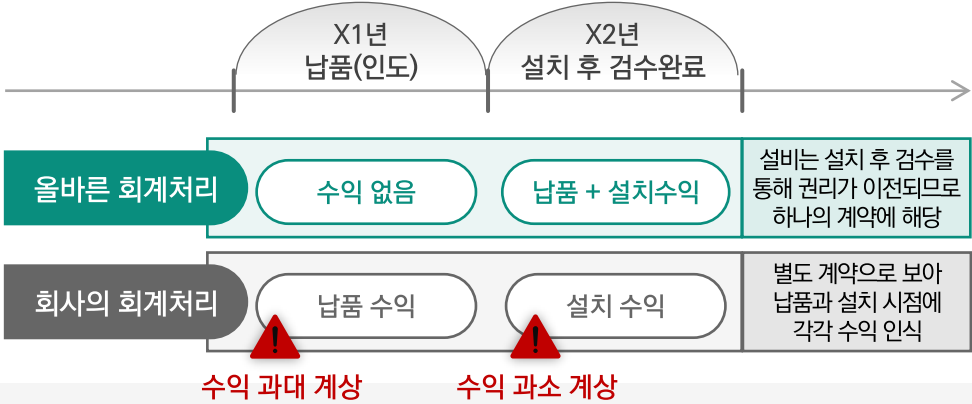
매출 감리지적사례를 통한 감사위원회 시사점

감리지적사례 2. 매출 기간귀속 오류

02

예시³⁾

- C사는 태양광발전소 설비업을 영위하며 설비의 납품 및 설치 계약을 구분하여 체결하고 설비의 납품은 x1년, 설치용역은 x2년에 완료하였음. 계약서상 설비는 설치 제공 후 검수 완료 시점에 위험과 효익이 이전됨.
- 회사는 설비 납품을 완료한 x1년과 설치용역을 완료한 x2년에 각각 수익을 인식하였음. 하지만 계약서상 설비는 설치용역을 제공한 이후 검수가 완료된 시점에 권리가 이전되어 잔금지급이 이루어지는 등 납품과 설치용역을 구분할 수 없어 단일 계약에 해당함. 따라서 회사는 설치 완료시점(x2년)에 설비의 납품 및 설치에 대한 수익을 모두 인식해야 함.



시사점

- ✓ 재화나 용역을 개별적으로 이전하는지, 결합 품목을 이전하는 것인지 판단한 근거를 계약서의 세부조항과 비교하여 확인

3) 금융감독원,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업종 사전예고, 2024.6.14

손에 잡히는 회계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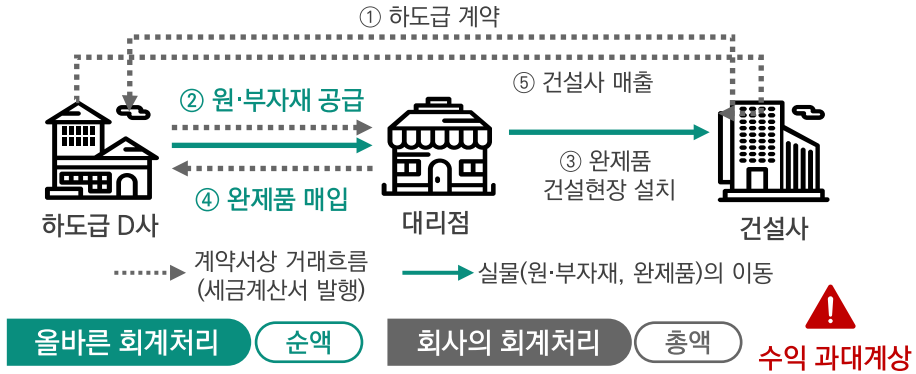
매출 감리지적사례를 통한 감사위원회 시사점

감리지적사례 3. 유상사급 관련 매출액 과대계상

03

예시⁴⁾

-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할 때 **기업이 거래의 주된 책임자**로서 그 재화나 용역을 **통제**한다면 거래의 주체(본인)에 해당하므로 수익을 총액으로 인식함.
- 반면 단순히 **거래의 주선** 업무만을 수행한다면 대리인에 해당하므로 수익을 순액으로 인식함.
- D사 거래의 경우 ② 대리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④ 완제품을 재매입하는 유상사급 거래를 총액 기준으로 매출 및 매출원가로 인식함.
- D사의 경우 대리점이 원·부자재를 제3자에게 처분·양도할 수 없고, 완제품 제작에 자율성이 없기 때문에 **총액이 아닌 순액으로 인식**해야 함.



시사점

- ✓ 기업이 그 재화나 용역의 주체(즉, 본인에 해당)임을 나타내는 지표가 고려되어야 함
 - ①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약속을 이행하는데 주된 책임이 기업에 있음
 - ②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의 통제를 이전하기 전까지 재고위험이 기업에 있음
 - ③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할 권한이 기업에 있음

4) 금융감독원, 2022년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2023.11